직 인 생 략

KICPA 한국공인회계사회
(http://www.kicpa.or.kr)
(120-012)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85-10번지 / 전화 (02)3149-0208 / 전송 (02)3149-0340
회원부 담 당 : 김 영 신 young0815@kicpa.or.kr

문서번호 : 회원 제2011-0064호

시행일자 : 2011. 1. 14

수 신 : 개업회원

참 조 :

제 목 :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관련 안내

1. 귀 회원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.

2. 국세청 공한 "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협조요청"(소득세과-43, 2011. 1. 12)과 관련합니다.

3. 금번 소득세법 개정(2010.12.27)으로 사업장현황신고 기한과 매출·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'11.2.10까지로 변경되었으나,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종전과 같이 '11.1.31까지입니다.

o 복식부기의무자는 가급적 1.31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쳐주시고,

o 부득이하게 2.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반드시 1.31까지 제출하여 지연제출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국세청 공한 1부. 끝.

한 국 공 인 회 계 사 회 장